

외국인 유학생 비자 재정입증서류 심사 유의사항

비자 구분	대상	재정증명서	재정능력
사증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신입생(해외 체류 유학생) ○복학생(해외 체류 복학생) ○신입 교환/방문학생(해외 체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국내외 은행잔고증명서 (본인, 부모님-가족관계증명서 증빙요함-) ※ 신청일 : 원칙상 학생의 비자 발급 신청일이나, 잔고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○총장, 학장 혹은 기관장 발행 장학금 지급확인서 ○지도교수 재정보증(보증 학생 1인으로 제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등록금 + 체제비= 2021년 기준 미화 2만불/1년 (재정능력 심사기준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자침 에 따라 매년 변동함)
체류자격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신입생 (국내에서 어학연수/고등학교 졸업 후 유학과정 진학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국내 은행 본인계좌 잔고증명서만 인정 ※ 신청일 : 원칙상 학생의 체류자격변경/기간연장 신청일이나, 잔고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○총장, 학장 혹은 기관장 발행 장학금 지급확인서 	
체류기간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상위과정진학생 (학사 -> 석사, 석사 -> 박사) ○초과학기생 ○수료연구재학생 ○교환/방문 수학기간 연장 		